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부의제 폐지>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66호)
▣ 박 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04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Ⅲ. 검토의견 ····· 4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4

2.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개관 및 논의경과 ····· 7

3. 주요 검토의견 ····· 12

※ 참고자료 ····· 14

Ⅰ. 제안경위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오기형・허　영・허성무・최민희・박지원・이용선
김남근・서미화・전진숙・이광희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5. 5. 2.

다. 회 부 일 : 2025. 5. 7.

※ 의안번호 : 10366

[박정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박　정・서영석・장철민・김태선・허　영・이재강
차규근・김정호・윤준병・위성곤・한민수・김영환
박홍배・김영진・송옥주・황정아・권향엽・안도걸
소병훈・이용선・허성무 의원(21인)

나. 제 안 일 : 2025. 6. 11.

다. 회 부 일 : 2025. 6. 12.

※ 의안번호 : 1070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안]

조세법률 제·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음.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박정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등을 의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약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개정안은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거나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오기형의원안**은 ‘세입부수법안’을, **박정의원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부수법안’ 모두를 제외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의 주요내용 정리

구 분		현행	오기형의원안	박정의원안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	예산안등	○	○	×
	세입부수법안	○	×	×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오기형의원안	박정의원안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 ---------- ------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의 ----------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심사기한) ① ------- ---------- ---------- ------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의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	----------.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에 ----------. ----------.	<삭 제>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	<삭 제>	<삭 제>

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삭 제>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⑨ (생 략)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삭 제>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개관 및 논의경과

현행법 제85조의3에 따른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이하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의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1일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2항[1]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당해 연도 말일에 의결하거나 차년도 1월 1일에 처리하는 등 헌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국회는 2012년 5월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자동부의 제도를 신설하여 헌법상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본회의에 예산안등을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안 심의 시부터 동 제도가 적용[2] 되고 있음.

---

1)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 당초 ’12년 5월 「국회법」개정 당시에는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2013년 5월 30일까지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음.

> “여·야간에 정부의 의견을 들어 국가재정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안이 현재(10월 2일까지)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2013년 5월 30일까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중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 규정 시행일을 개정하여 연장한다.”

이에 따라「국가재정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연차적으로 앞당기되, 그 시행시기는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에 맞추어 국회법 상 예산안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도 시행일을 1년 늦추어 2014년 5월 30일부터 적용하도록 2013년 5월에 「국회법」이 재차 개정되었음.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의 상정 시기가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정착되었으며, 예산안등의 본회의 처리 시기 또한 비교적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법」 제84조[3]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예산안등은 202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제출되어 처리되었음.

[표-3] 자동부의 제도 시행 전후 국회 예산안 처리 현황

구 분		예결위 상정	예결위 의결	본회의 의결
제18대	2009년 예산안	2008. 11. 19.	2008. 12. 13.	2008. 12. 13.
	2010년 예산안	2009. 12. 7.	2009. 12. 31.	2009. 12. 31.
	2011년 예산안	2010. 11. 17.	2010. 12. 8.	2010. 12. 8.
	2012년 예산안	2011. 11. 7.	2011. 12. 31.	2011. 12. 31.
제19대	2013년 예산안	2012. 10. 31.	2012. 12. 31.	2013. 1. 1.
	2014년 예산안	2013. 12. 4.	2013. 12. 31.	2014. 1. 1.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시행>			
	2015년 예산안	2014. 11. 6.	-	**2014. 12. 2.**
	2016년 예산안	2015. 10. 28.	-	2015. 12. 3.
제20대	2017년 예산안	2016. 10. 26.	-	2016. 12. 3.
	2018년 예산안	2017. 11. 6.	-	2017. 12. 6.
	2019년 예산안	2018. 11. 5.	-	2018. 12. 8.
	2020년 예산안	2019. 10. 28.	-	2019. 12. 10.
제21대	2021년 예산안	2020. 11. 4.	-	**2020. 12. 2.**
	2022년 예산안	2021. 11. 5.	-	2021. 12. 3.
	2023년 예산안	2022. 11. 7.	-	2022. 12. 24.
	2024년 예산안	2023. 11. 3.	-	2023. 12. 21.
제22대	2025년 예산안	2024. 11. 7.	**2024. 11. 29.**	2024. 12. 10.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3)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생 략)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일환으로 「국회법」에는 예산안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상설기구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등이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서 동 제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예산안등이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더라도 12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됨에 따라 정부가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었음.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운영위원회(2024. 10. 31.)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2024. 11. 27.)를 거쳐 2024. 11.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205958호)」(이하 “국회의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표-4] 국회의결안 관련 개정안 및 대안 심사 경과

구 분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자	제안일	위원회 회부일	심사결과		
						위원회	본회의	재의결
일부 개정 법률안	1	2203075	오기형의원	24.08.22.	24.08.23.	대안반영 폐기 24.10.31.	대안반영 폐기 24.11.28.	-
	2	2203966	강경숙의원	24.09.12.	24.09.13.			
	3	2204636	황운하의원	24.10.10.	24.10.11.			
	4	2204650	임광현의원	24.10.11.	24.10.14.			
대안		2205958	국회운영 위원장	24.11.27.	-	대안가결 24.10.31.	원안가결 24.11.28.	부결 25.01.08.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의결안은 기존 자동부의 제도를 변경하여,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부수법안을 11월 30일까지 심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 한해 예산안등 및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5] 국회의결안 조문대비표

현 행	국회의결안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부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 기한을 경과하여 심사 중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③ ----- 제2항---------- 제2항----------. ④ · 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4]에 따라 2024. 12. 19.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재의요구 이유를 제시하였음.[5]

첫째,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6]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둘째,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빈번하게 위반되어 온 예산안 의결 기한을 국회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여·야 합의로 마련한 현행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남.

셋째, 정부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기한(90일)보다 30일 먼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기간 부족을 이유로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넷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등 및 세입부수법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

이후 국회는 2025. 1. 8. 정부의 재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었음.

---

4)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5)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p.14 [참고 : 정부의『국회법 개정안』재의요구안] 참조
6)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 주요 검토의견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박정의원안**은 **국회의결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안등 및 세입부수법안을 모두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세부적 내용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박정의원안**은 예산안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나, 기한 도과시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세입부수법안의 경우 심사기한을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반면, **국회의결안**은 예산안등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심사기한을 유지하면서, 기한 경과 후에도 위원회 심사를 계속하도록 허용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물론, **박정의원안**의 경우도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음.[7)]

---

7)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둘째, 오기형의원안은 예산안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자동부의 제도를 유지하되, 세입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조세 등 세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다만,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8]를 택하고 있어 조세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 없이 세입 예산안의 심사만으로는 세입의 변경을 야기할 수 없고, 예산총계주의[9]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며, 예산안과 이에 근거하는 법률안 심사를 분리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성을 저해하고, 다음연도 세입 규모의 정확한 계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참고로, **국회의결안**도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안등과 세입부수법안을 모두 일괄하여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셋째,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가 예산안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인 시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2025년 11월 30일 이전에 공포되어야 하고, 만일 그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6

8)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9)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참 고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2024년 12월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개정안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헌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예산 승인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 부여에 상응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에서 국회의 예산안 의결 기한을 규정한 것은 예산을 1회계연도마다 편성하도록 하는 1년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원활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충분히 준비하고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

을 제시하고 국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 헌법에서 정한 기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국회법」 제85조의3제1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의결 기한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2.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빈번하게 위반되어 온 예산안 의결 기한을 국회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여야 합의로 마련한 현행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행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됩니다.

-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해마다 정기국회를 넘기고 연말이 다 되어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예산안을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하고,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예산안 심의 이후 2023년과 2024년을 제외하고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헌법에서 정한 의결 기한 초과 일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1)]

○ 그러나,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지연이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는 고질적인 예산안 심의의 파행을 바로잡겠다는 여야의 의사가 합치되어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규정한 현행 「국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예산안의 지연 처리가 반복되던 과거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3. 정부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기한보다 30일 먼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국회법」의 개정 사유로 제시된 충분한 국회 심의 기간 확보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1) 예산안 의결일: ('15) 12.2, ('16) 12.3, ('17) 12.3, ('18) 12.6, ('19) 12.8, ('20) 12.10, ('21) 12.2, ('22) 12.3, ('23) 12.24, ('24) 12.21.

○ 2014년 5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시행으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 기한의 구속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회가 충분한 예산안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을 헌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앞당기는 내용으로 2013년 5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33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헌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한인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보다 한 달을 더 앞당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안 제출을 늦출 수 있는 어떠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간이 1개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말까지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더 나아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4. 개정안이 시행되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이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지연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에 따라 예산집행 준비기간이 부족하게 되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보조를 받는 기관들도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배정, 자금의 배정, 집행 기준의 수립, 사업공고, 계약의 체결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모두 연쇄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보조를 받는 기관도 자체 예산에 국회 의결 결과를 반영해야 하므로, 이들 기관의 예산집행도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2)]

- 이에 따라 그동안 예산안이 12월 초에 의결되었을 때는 상당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해 왔으나, 국회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예산안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됨에 따라 고용,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도

2)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음

가중되며,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국가에 대한 대내외 신뢰 하락이 우려됩니다.

○ 이처럼 개정안의 시행으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보조를 받는 기관이 시의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경제주체가 겪을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공공 복리가 저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 결론

○ 이와 같이 개정안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와 예산안 의결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여야 합의로 마련한 현행 국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제출 기한보다 30일 앞당겨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간 확보를 위해 예산안 지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개정안의 시행으로 예산안 의결이 상습적으로 지연되면 국가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경제주체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공공 복리가 저해될 가능성이 크며, 국가에 대한 대내외 신뢰 하락이 우려

됩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